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52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5. 12. 5.

제출자: 울산광역시

중구청장

### 1. 개정이유

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완화와 특별휴가 신설을 통해 직원 전체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저연차 공무원들의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제고하여 행복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장기재직휴가 사용 요건 수정(안 제16조제4항)

(현행) 10년 이상 재직공무원 → (개정) 5년 이상 재직공무원

나. 특별휴가 신설(안 제16조제9항 ~ 제12항)

- 군 입영·전역휴가, 결혼준비휴가, 새내기도약휴가,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 특별휴가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: 따로 붙임

### 4. 근거법규: 따로 붙임

가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9조

나.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의7

## 5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 사항: 해당사항 없음

나. 규제사무 심의: 해당사항 없음

다. 성별영향 평가: 개선사항 반영(가족복지과-44046호, 2025. 11. 7.)

- (개선의견) 성범죄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추가 신설 제안

- (반영) 성범죄 피해 공무원 등에 대한 특별휴가 추가 신설

라. 입법예고: 2025. 11. 4. ~ 2025. 11. 25.(21일간) / (의견없음)

마.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: 따로 붙임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4항 중 “10년”을 “5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⑨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은 입영일 전날 및 전역일 다음 날,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⑩ 재직 중인 공무원이 결혼을 준비할 경우 결혼식이 있는 주 평일에 결혼준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.

⑪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2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

⑫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~ ③ (생략)</p> <p>④ <u>10년</u>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재직 중에 6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</p> <p>⑤ ~ ⑧ (생략)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	<p>제16조(특별휴가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<u>5년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.</p> <p>⑤ ~ ⑧ (현행과 같음)</p> <p>⑨ <u>군 입영이 확정된</u> 공무원은 <u>입영일 전날 및 전역일 다음 날, 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⑩ <u>재직 중인 공무원이 결혼을 준비할 경우 결혼식이 있는 주 평일에 결혼준비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.</u></p> <p>⑪ <u>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</u> 공무원은 <u>해당 재직기간 중 2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⑫ 「양성평등기본법」 제30조제1항에 따라 <u>성폭력·가정폭력·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.</u></p>

## 근거법규

### □ 「지방공무원법」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미첨부 근거규정
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2호  
- 소요되는 예상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  
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

### 2. 미첨부 사유

-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 
직원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, 이미 사업이 시행되어  
그 비용이 공개된 경우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하여  
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함.

### 3. 작성자

- 소 속: 총무과
- 직 급: 지방행정주사보
- 성 명: 박재경
- 연락처: (052)290-3163